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국 가 공 무 원 총 정 원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안전 등의 분야에 공무원을 증원하는 등 정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총정원 상한을 현행 32만2,463명에서 32만9,503명으로 확대하고,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시·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을 총정원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안

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32만2,463명”을 “32만9,503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총정원) ①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(이하 “총정원”이라 한다)는 <u>32만2,463명</u> 으로 한다.	제2조(총정원) ①----- ----- ----- <u>32만9,503명</u> -----.
②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.	②----- -----.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8.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 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07